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(약칭: 에너지회계법 시행령)

[시행 2017.7.1.] [대통령령 제27777호, 2017.1.10., 일부개정]



산업통상자원부(에너지자원정책과) 044-203-5124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2.6., 2017.1.10.>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1.8.10., 2007.2.6., 2008.2.29., 2010.11.15., 2012.10.29., 2013.3.23., 2017.1.10.>

1. "용자"란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의 용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 대상 기관(이하 "용자 대상 기관"이라 한다)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2. "대출"이란 용자 대상 기관이 용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
 - 나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의한 한국산업은행
 - 다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
 - 라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의한 중소기업은행
 - 마. 「여성전문금융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제3조(사업의 범위 등)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1996.4.6., 1996.12.31., 1998.7.16., 1998.12.31., 1999.6.8., 2001.8.10., 2004.3.29., 2005.4.22., 2005.8.31., 2005.12.26., 2006.9.4., 2007.2.6., 2008.9.16., 2010.4.13., 2012.10.29., 2015.6.30.>

1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에 의한 석유수급·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
2. 석유개발사업 및 「한국석유공사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
3.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의한 도시가스사업
4. 「송유관안전관리법」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
5. 「에너지법」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
6.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「광업법」·「해저광물자원 개발법」·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
7. 석재사업 및 「골재채취법」에 의한 골재사업
8. 「석탄산업법」에 의한 석탄사업 및 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
9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,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「에너지법」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
10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·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또는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
- 10의2.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
11. 전기·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
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,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

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·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1998.12.31., 1999.1.29., 2001.3.27., 2004.12.3., 2006.4.27., 2007.2.6., 2008.9.30., 2009.4.21., 2009.4.30., 2010.4.13., 2012.10.29., 2015.7.24.>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
2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
3.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
4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



5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 6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
 7. 삭제 <2012.10.29.>
 8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
 9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 10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
 11. 「에너지법」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-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·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1998.12.31., 2007.2.6., 2009.6.26., 2012.10.29.>
1. 「한국석유공사법」에 의한 한국석유공사
 2. 「대한석탄공사법」에 의한 대한석탄공사
 3. 「한국광물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
 4. 「한국가스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가스공사
- [제목개정 2012.10.29.]

제4조(용자조건등) ①용자 대상 기관에 대한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. 다만, 용자이자율과 용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1998.12.31., 2008.2.29., 2013.3.23., 2017.1.10.>

②용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1998.12.31., 2008.2.29., 2013.3.23., 2017.1.10.>

제5조(용자 대상 기관) 용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7.1.10.]

제6조(용자금의 감면)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
 2.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·지변, 국내·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용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
- ②용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용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1998.12.31., 2008.2.29., 2013.3.23., 2017.1.10.>
-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1998.12.31., 2008.2.29., 2013.3.23.>

제7조 삭제 <2012.10.29.>

제8조(회계사무의 위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. <개정 2017.1.10.>

1. 한국석유공사: 다음 각 목의 사무
 - 가. 법 제5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5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
 - 나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
 2. 대한석탄공사: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
 3. 한국광해관리공단: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
 4. 한국에너지공단: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세입의 수납, 예산의 지출·결산,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
- ②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·대한석탄공사·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·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,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12.31., 2008.2.29., 2012.10.29., 2013.3.23., 2017.1.10.>
- ③한국석유공사·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·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0.29.,



2013.3.23., 2017.1.10.>

부칙 <제27777호, 2017.1.10.>

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